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23

발의연월일: 2023. 2. 3.

발 의 자:노용호·이명수·엄태영

김용판 • 박덕흠 • 지성호

김희곤 · 김성원 · 김영식

유경준 · 정희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제25조의5).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벤처기 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1.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20일
 - 2.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30일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 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 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업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1.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 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 우: 20일
- 2.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기업인 경우: 30일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